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87

발의연월일: 2025. 4. 4.

발 의 자: 허성무·이수진·김문수

최민희 • 문정복 • 민병덕

송재봉·손명수·이광희

이병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의 행정재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,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.

특히,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 정 부담을 완화하고, 지역 간 협력 및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 려는 것임(안 제34조)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지방자치단체"를 "지방자치단체(시·도 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사용료 면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.
-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행정재산의 공익적 활용 성과를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

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3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중앙관 제3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-----. 이 경우 사 용료 면제 기간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되,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・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 는 날까지로 한다. 1. · 1의2. (생략) 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 2.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· 공공 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 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----기방자치단체 (시 · 도 교육청을 포함한다. 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-3. (생략) 3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행정재산의 공익적 활용

<u>성과를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</u> <u>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